##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9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 엄태영 · 박충권 · 이종배

조지연 · 김은혜 · 신성범

권영진 · 서천호 · 유상범

박덕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률 제 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험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로서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이하 "미수령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수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	2
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	
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u>대</u>	<u>1</u>
<u>통령령으로</u> 정하는 금액을 한	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
도로 한다. <후단 신설>	<u> 경으로</u>
	이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대통
	<u> </u>
	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여
	<u>야 한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